



스티포 (상해) 정보기술 자문 유한공사 등 VS 스티포 유한공사(Certiport, Inc) 등 상업비밀침해 분쟁 사건

44

01 서지 사항

국가 법원	상해시 제1중급인민법원	사건번호	(2013)沪一中民五(知)初字第77号
판결 일자	2014년 4월 24일	판결 결과	원고 청구기각(권리자 패)
원고	1.스티포(상해) 정보기술 자문 유한공사, 2. 스티란 국제 유한공사 (미국계 외자기업)		
피고	1. 스티포 유한 공사, 2. 페이성 공사		
참조 법령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제55조, 민사소송법 제119조		
영업비밀	재무자료 및 고객자료		
키워드 (Keyword)	재무자료(财务资料), 고객자료(客户资料), 관할이의(管辖权异议), 소송주체 자격결여(缺乏诉讼主体资格)		

02 사건 개요

원고 스티포(상해) 정보기술 자문 유한공사(이하 ‘스티포 상해 공사’)는, 원고 스티란 국제 유한공사(이하 ‘스티란 공사’), 피고 스티포 유한공사(이하 스티포 공사)와 사건 외 Odyssey Communication Inc 삼자에 의하여 중국 마이크로소프트 엔지니어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자격 증명에 대한 대리 업무를 개척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이후 피고 페이성 공사는 피고 스티포 공사를 합병하였다.

이후, 양 피고는 원고 스티포 상해공사의 상업비밀인 재무자료, 고객자료, 자산 및 수입을 탈취하였으며, 일방적으로 원고 스티포 상해 공사의 모든 고객에게 합작 협의의 해지를 요청하고, 원고 스티포 상해 공사의 중국 홈페이지를 폐쇄하였다.

이에 원고 스티포 공사는 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원고 스티란 공사는 주주로서의 합법적인 이익 침해를 이유로 본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들은 이에 대해 관할권 이의를 제기하였다.

03 주요 쟁점

원심	⇔	⇐	피고
원고 스티포 상해 공사는 상업비밀 침해 금지 주장			본 사건 소송제기는 원고 스티포 상해 공사의 진실한 의사가 아님
원고 스티란 공사는 주주로서의 합법적 이익 침해 금지 주장			스티란 공사는 스티포 상해공사의 주주일 뿐, 본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음
양자는 피고들이 공사 주주로서 공사에 대한 직무책임 및 충실의무 위반을 주장			스티란 공사는 스티포 상해공사의 주주일 뿐, 본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음

04 판결 요지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제55조에 의하여, 민사 법률행위는 응당 진실한 의사표시여야 하는데, 본 사건 원고인 스티포 상해공사의 내보에서 소송제기에 대해 의견이 나누어지는 상황이다. 본 소송의 제기가 스티포 상해공사의 의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법률과 공사 정관 규정에 의하여 표결이 진행되고 표결 결과가 확인되어야 한다.

원고 스티란 공사가 스티로 상해공사의 주주로 잠재적인 이익 분배권의 손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소송주체의 자격을 결여 하였다.

원고들의 소송 청구를 기각한다.

05 Key Point

본 사건은 상업비밀침해 사건이라기보다는, 경영권 분쟁에 가까운 사례이다.

피고들이 관할권 이의를 제기하였는데, 판결에서 실질적으로 다투어지는 쟁점은 소송요건에 관한 사항이다. 한국 법원에서는 소송요건의 결여되는 경우, '각하' 판결을 하는데, 중국에서는 '각하'와 '기각'을 특별히 구분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본 판결은 1심 판결로 1심 판결문의 형식과 주문 등을 두루 살펴볼 수 있다. 1심 판결 합의정 구성원에 '인민배심원'도 속해있는 것이 눈에 띈다.